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48

발의연월일: 2024. 11. 25.

발 의 자:배준영·박준태·정성국

고동진 · 강승규 · 서천호

강명구 • 이성권 • 서명옥

김종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중운집인 파사고가 사회재난의 한 원인 유형으로 신설되었음.

그럼에도 최근 공연, 축제, 야외운동 등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호흡곤란, 탈진 등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다중운집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하고, 다중운집으로 인해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험성이 큰 경우 안전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필요시 시설, 장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하는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다중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행사의 중단 또는 다중의 해산을 권고하도록 하고,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 제재를 신설하여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66조의12 신설 및 제78조의 3).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12, 제66조의13을 각각 제8장의 제66조의13, 제9장의 제66조의14로 하고, 제8장에 제66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12(다중운집 시 재난 예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정 시설, 장소 등에서 다중운집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 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중운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 2.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 3. 공간의 수용 능력
- 4.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 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 시설, 장소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해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중운집 시 재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8조의3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제66조의12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6조의12(다중운집 시 재난 예방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
	할 지역의 특정 시설, 장소 등에서
	다중운집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
	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
	중운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u>다.</u>
	1.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2.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u>3. 공간의 수용 능력</u>
	4.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제66조의1
	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 등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
	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 안전점검
	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 나 각종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 시설, 장소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해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중운집 시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8조의3(벌칙) <u>제31조제1항, 제66</u> <u>조의12제4항</u>에 -----

제78조의3(벌칙) <u>제31조제1항</u>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